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3월 7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3월 9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시행과 태양광산업육성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 또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태양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태양광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5조~안 제10조)

다. 태양광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안 제11조)

라. 태양광산업 육성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마. 육성사업의 수탁자 등에 대한 지도·점검(안 제13조)

바. 국내외 태양광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 유치 지원(안 제15조)

사.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7조)

5. 검토의견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현행 조례는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12월 27일 제정되었음
- 태양광산업은 민선 4기부터 추진되어온 충북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국도 36호선 주변에 부품소재 기업체가 집적화되어 있고,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국내 셀·모듈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음
- 조례 시행과정에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및 사업추진 관련 제도적 개선과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나. 조례안의 주요 개정 조항에 대한 의견

-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 6개 조항이 증가한 본칙 1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4조**는 ‘태양광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현행 조례는 태양광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5년 단위 육성계획과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으로 태양광산업 기술개발 동향 및 시장변화 분석 등 태양광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적절해 보임

○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제1항에서 개별 산업 육성⁴⁾ 조례안과 같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제2항에서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제4항에서 간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함
- 제5항에서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기구**로 규정함
 - 이것은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고, 실질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과 비교할 때, 제척 등의 사유를 강화(제1호)하거나 완화(제3호)하여 규정하였음⁵⁾

- 제3호에서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증언, 감정 외에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삭제하여 제척·기피·회피 조건을 완화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수소산업, 데이터산업, 반도체산업, 미래자동차산업, 드론산업, 이차전지산업, 소재·부품산업, 국방산업, 뿌리산업, 승강기산업 등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생략)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생략)	2. (생략)
5)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 을 한 경우

다. 종합의견

- 이 조례안은 태양광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산업 육성 관련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통일하여 정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태양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다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